

# 급수관 상태 수질검사 안내문

## ■ 관련근거: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 1 급수관 세척 등 조치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

- 관련근거: 수도법 시행령 제51조
- 건축연면적이 6만㎡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 대규모점포, 운수시설, 공동주택, 일반업무시설, 오피스텔(업무, 숙박) 등
- 건축연면적 5천㎡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학교(사립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도서관,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교정시설, 갱생보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 심사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등

### 2 수질검사 방법

- 관련근거: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 검사방법: 건축물이 여러 동이 있는 경우 각 동마다 수질검사 실시  
다만, 동별 급수관의 설치 시점 및 설치 제품이 동일함을 인정한 경우에는 하나의 동에서 측정한 결과를 건물 전체의 급수관 수질검사 결과로 볼 수 있다
  - ▶ 각 동별 급수관 설치 시점: 건축물 관리대장의 동별 준공일 확인
  - ▶ 각 동별 설치 제품: 준공도면 등 설치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검사기관: 환경부 및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2항)인정업체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
- 기관검색: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http://arisu.seoul.go.kr>) ▶ 민원서비스 ▶ 저수조청소등록 ▶ 수질검사기관 안내
- 검사시기: 건축물 준공검사 후 5년이 지난 날로 부터 2년 주기로 일반검사 실시
  - 다만, 최초 수질검사는 검사대상이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

### 3 서류제출 방법

- 급수관상태 수질검사 성적서
- 제출기관: 강서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우)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 제출형태: 우편제출

### 4 위생조치 미시행에 따른 조치

- 관련근거: 수도법 제83조 6호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문의: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급수운영과) TEL 02-3146-3966. FAX 02-3146-3989

급수설비 상태검사의 구분 및 방법(제23조 관련)

1. 일반검사

분 류	항 목	검 사 방 법
기초조사	준공연도, 배관도면	관련 도면·서류·현지조사 등을 병행한다.
	관중, 관경, 배관길이	관련 도면·서류·현지조사 등을 병행한다.
	문제점 조사	- 출수불량, 녹물 등 수질불량 등을 조사한다. - 누수, 밸브 작동 상태 등 조사한다. - 이용 주민으로부터의 탐문조사 등을 활용한다.
급수관 수질검사	시료 채취 방법	건물 내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 하나 이상에서 물 1리터를 채취한다.
	검사항목 및 기준	- 탁도: 1NTU 이하 - 수소이온농도: 5.8 이상 8.5 이하 - 색도: 5도 이하 - 철: 0.3mg/L 이하 - 납: 0.01mg/L 이하 - 구리: 1mg/L 이하 - 아연: 3mg/L 이하

2. 전문검사

분 류	항 목	검 사 방 법
현장 조사	수압 측정	가장 높은 층의 냉수 수도꼭지를 하나 이상 측정(화장실의 수도꼭지를 표본으로 측정한다)하되, 건물이 여러 동일 경우에는 각 동마다 측정한다.
	내시경 관찰	단수시킨 후 지하저수조 급수배관, 입상관(立上管), 건물 내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를 하나 이상 분리하여 내시경을 이용하여 진단한다.
	초음파 두께 측정	건물 안의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 하나 이상에서 스케일 두께를 측정한다.
	유속	건물 안의 가장 높은 층의 냉수 수도꼭지 하나 이상에서 유속을 측정한다.
	유량	건물 안의 가장 높은 층의 냉수 수도꼭지 하나 이상에서 유량을 측정한다.
	외부 부식 관찰	계량기 등에 연결된 급수 및 온수 배관, 밸브류 등의 외부 부식 상태를 관찰하여 검사한다.

비 고

- 제1호의 일반검사 중 급수관 수질검사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수질검사신청서를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수질검사기관에 제출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호의 일반검사 중 급수관 수질검사는 건물이 여러 동(棟)으로 구성된 경우 각 동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수도사업자가 소유자등의 신청을 받아 각 동별 급수관의 설치 시점 및 설치 제품이 동일함을 인정한 경우에는 하나의 동에서 측정한 결과를 건물 전체의 급수관 수질검사 결과로 볼 수 있다.**
- 제2호의 전문검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환경부장관이 전문검사를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